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[Q]

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?

[A]

-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(GUI),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,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.
 - 가.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(GUI)
 - 특허청 홈페이지,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
 - 한글 프로그램,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/W GUI
 - 휴대전화기, PDA,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
 - Navigator, 냉장고, MP3, CDP,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
 - 나. 아이콘(Icon)
 - 한글 아이콘,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
 -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
 -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
 - 다. 그래픽 이미지 (Graphic Images)
 - Contents로서의 그래픽
 -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
 - 캐릭터
 -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
 - 이모티콘
 - 3D 애니메이션
 -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
(배터리의 잔량표시, 수신 상태표시,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) 등

[Q]
[A]

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?

-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,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어야 합니다.
- 따라서 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, 휴대전화기, 개인휴대정보단말기(PDA),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(Navigator), 냉장고, 세탁기, 전자레인지, 복사기, 정수기, MP3 플레이어, CD 플레이어, MD 플레이어, 워크맨, 디지털 카메라, 디지털 TV,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(ATM), POS(Point of Sale)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가 포함됩니다.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- 가. 디자인보호법규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
 -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
 -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
 -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(PDA) 등
 - 나. 디자인보호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
 - 아이콘, 컴퓨터 아이콘
 -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(GUI) 등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